

반부패·청렴 주의보 발령

□ 발령번호 : 제2024 - 3호

□ 발령사항 : 추석 명절 「선물 안주고 안받기」 실천

□ 기 간 : 2024. 8. 24.(토) ~ 9. 22.(일) / 30일간

□ 근거법령

-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
-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

□ 세부내용

○ 공직자등은 **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**

[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]

-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가능

음식물 5만원*, 선물 5만원(단,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15만원), 경조사비 5만원(단, 화환 조화는 10만원)
 * '청탁금지법 시행 공포 [3만원→5만원 상향]

*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·농수산물가공품은 30만원까지 제공

○ 추석 명절 **직원 간 선물은 최대한 마음으로만 주고 받기**

- 청탁금지법 상 가액범위와 상관없이 연중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전 직원 동참

○ 관행적인 부정청탁 및 **‘떡값’ 명목의 금품·향응 등 수수금지**

-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*에게는 일체의 선물이나 식사 금지

* 계약, 공사, 인허가, 민원, 법률관계 등의 직접적 이해관계인

□ 위반시 행위에 대한 제재



◇ 청탁금지법 위반

- ☞ 징계(성실·청렴의무위반), **형사처벌**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☞ **과태료부과** (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)

◇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☞ 징계(성실·청렴의무위반)